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스포츠 소속 단시간근로자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5월 11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74호

### 스포츠 소속 단시간근로자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스포츠 소속 단시간근로자 관리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제4조(채용)

- ④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(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)까지,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수 있도록 공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, 공휴일은 포함하되,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이상(토·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)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